



겸임교원임용 규정

제정일	2012.11. 1
개정일	2023. 5. 1
개정차수	2차
담당부서	행정지원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겸임교원의 자격과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겸임교원이라 함은 산학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, 연구기관,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학생지도 및 학사행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을 말한다.

제 3조 (자격) ① 겸임교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. 다만, 예·체능계열 및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수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담당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며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현직자로 유사경력이 3년 이상인 현직자
 2. 담당과목의 교수능력이 있는 자
 3.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
 4. 주당 1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
- ②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

제 4조 (임용) 겸임교원의 임용은 소속 학부(과)의 추천 또는 공개채용으로 하며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21. 7. 1)

제 5조 (임용기간 및 재임용) ①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재임용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최초 신규임용 시에는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.

- ② 겸임교원을 재임용하기 위해서는 재임용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
③ 겸임교원의 재임용 평가는 강의에 대한 능력과 실적, 교육관계법령의 준수여부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,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,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④ 총장은 재임용 절차를 거쳐 근무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겸임교원에게 재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 겸임교원이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 (개정 2023. 5. 1)

제 6조 (신분보장 등) ① 겸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재임용 평가의 탈락, 형의 선고, 징계처분, 본직기관에서의 임용동의 거부 및 본직기관의 상실 또는 법인정관과 본교 제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 해당 교과목 또는 소속 학부(과)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②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본교 제 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임면권자가 직권면직 할 수 있다.

제 7조 (처우) 겸임교원의 보수는 주당 강의시간에 따른 강사료로 지급되며, 강사료의 지급 기준 액

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8조 (준용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정관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겸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